

2024년도 「자동차·조선산업 발전 유공」 포상 추가 공고

제21회 자동차의 날을 맞이하여 2024년도 「자동차·조선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중 자동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등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조선산업 발전 유공' 포상은 별도 시행 예정('24. 5월 공고예정)

2024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 포상 요령

I

포상개요

① 목 적

-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자동차 산업인의 사기진작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실시
 - * 「자동차의 날」은 '99.5.12 수출 1천만대 달성을 기념하여 2004년에 제정됨에 따라 매년 기념행사 개최
- 이에,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자동차산업인의 화합과 결속 도모

② 포상 규모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포상 14점, 장관표창 20점

* '23년도 포상실적(14점) : 훈장(2점), 포장(3점), 대통령표창(4점), 국무총리표창(5점)

③ 포상 시기

- 행사명 :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24. 5. 9(목)
- 장 소 :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추후 변경 가능)

④ 포상 중점 사항

-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중점 발굴
- 해외시장 개척, 수출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경영합리화,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뚜렷한 기여가 있는 유공자를 중점 발굴
-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자동차와 타산업과의 융합기술 등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여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포상기회 확대
- AI, 공유, 모빌리티 등 미래차산업 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에 기여한 스타트업 기업 발굴

II

포상 대상

① 포상 추천 대상

-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분야의 업계,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자
 - 수출 증진 및 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
 - '자동차+타 산업'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등에 기여한 자
- 미래차산업 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에 기여한 자

② 심사 기준

- 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포상분야별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유공자의 공적내용 심사

포상대상	심사기준
자동차업계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도전, 리더십) ■ 경영혁신 (고용, 매출 등) ■ 신기술 & 디자인 개발 (품질 및생산성 혁신, 신제품, 신소재, 생산 기술 개발 등) ■ 글로벌 경영 (수출, 해외진출 등) ■ 상생협력 및 노사관계 발전 기여 ■ 미래 자동차 융합발전 기여 등
자동차업계 현장기술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AI, 공유, 모빌리티 등) ■ 경영혁신, 노사화합 기여도 등
학계, 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협·단체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동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기업 육성 및 지원 실적, 창조적 인재 육성, 신기술개발, 연구, 논문 실적 등)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자동차산업에 종사한 외국인 임원은 훈·포장 대상에 포함 가능

Ⅲ 포상추천 제한

-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적용
- ◇ 「정부포상 업무지침(2023.1.1. 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가. 재(再)포상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① 훈장은 7년 이상, ② 포장은 5년 이상, ③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이외에는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수사중이거나 형벌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

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입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단, 최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

바.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사.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아.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IV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① 포상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

-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내용 등의 사실성 검토
- 유공자 포상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순위 결정
 - (구 성)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자동차산업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 (역 할) 포상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종합 검토 및 추천 대상자 결정
-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최종 추천
 - 추천대상자의 신원조회,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사전확인
 - 특히,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경우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공적을 충분히 확인 후 포상여부 결정

② 추진일정

- 2023. 12. 21 : 포상 신청 공고
 - * 대한민국 상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홈페이지 공고
 - 2023. 12. 22~2024. 1. 26 : 공적서류 접수
 - 2024. 2.6~2024. 2.13 : 공적서류 추가 접수
 - 2~3월 : 공적내용의 사실성 검토, 포상대상자 심사 및 후보자 공개검증
 - * 포상후보자 15일간 공개검증, 범죄경력·불공정거래·산업재해 등 결격사유 조회
 - 3월초 :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4월초 : 유공대상자 행정안전부 추천
 - 4월중 : 행안부 공적심사(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 ※ 상기 일정 변동 가능

붙임 : 1. 「2024년도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추천 안내
2. 「2024년도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추천 서류 작성요령

[붙임1]

「2024년도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추천 추가 접수안내

① 접수기간 : 2024. 2. 6(화) ~ 2024. 2. 13(화)

※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②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 autoday@kama.or.kr)

○ 접수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소 : (06710)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5 자동차회관 5층
정책기획실 김로운 선임(☎02-3660-1884)

○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한글, 워드 파일 작성 송부)
- 포상신청자의 소속기업 정보 1부
-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증빙자료(20매 이내), 반명함판 사진(jpg파일)

※ 외국인의 경우는 영문 이력서 및 공적조서 추가 제출

※ 상기 제출서류 및 반명함판 사진파일 e-mail송부

- 서류와 사진의 파일명은 “소속회사명(추천대상자이름)”으로 저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2]

「2024년도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추천 서류 작성 요령

① 유의사항

- 반드시 소정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수록
- 동 기간에 다른 추천기관에서 추진하는 포상대상자일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성서류는 출력·날인하여 우편 접수하고, 최종 출력된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autoday@kama.or.kr)로 송부(우편 접수 및 이메일 송부 必)
-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 주의

② 세부사항

- 추천서
 - 담당자는 포상 신청 관련 미비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 대응 가능한 실무담당자 정보를 기재
 - 추천권자는 소속업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한함
- 공적조서 (한글, 워드파일로 작성)
 - 공적요지는 공적조서 내용을 80자 이내로 요약 기재
 - 소속, 직위는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명칭으로, 재직증명서 기준 정확하게 작성
 - 주요 학력 및 경력란은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최종학력과 그 직전학력 2개 이상을 반드시 기재 요망)
 - 과거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기 포상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니

구체적으로 기재 (장관 표창 이상의 경우만 기재)

※ 추천 대상자 행안부 제출시 과거 포상기록 조회

- 공적사항은 본인의 입장이 아닌 “추천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공적조사(을)지는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표, 그림 등은 공적조서에 삽입하지 말고 별도 기타 자료로 작성

○ 포상 후보자 소속 기업·단체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법인가입번호는 추천 후보자 소속사업장 번호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 수공기간은 해당 분야 경력기간 산출 기재 (포상추천일 기준)

(예 : 15년 5개월 12일 경우

1	5	0	5	1	2
---	---	---	---	---	---

)

- 재직기간은 현재 소속기업 기간 (직장 입사일~추천일 기준)
- 증명사항란의 “재직기간”은 공적조서의 “⑫공적기간”에 산정된 기간과 일치되도록 경력 및 재직사항을 기재
- 첨부되는 “인사기록카드”는 개인 경력(과거 경력포함) 부분이 포함된 사본으로 첨부하고 회사 직인 날인

○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불인정

○ 기 타

- 경력(재직)증명서, 공적사항 등의 내용이 차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

(첨부 1)

(앞면)

공 적 조 서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3) 군번 (군인의 경우)
*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상장표기용			
직 위	등급 (직급·계급)	수공기간		
상장표기용		년 월		
공적요지(80자 이내)				
<p>※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함(마지막은 “~ 기여함”으로 끝맺음)</p>				
<p>작성예(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p>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년 월 일		
		(인)		

(뒷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적 내용 요약 (300자 이상 500자 이내)			
<p>※개조식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 내용 요약은 1차 서류심사 및 수상 시 대외홍보용 자료로 활용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공적조서(을) (전체 2,000자 이상)

<객관적 사실(수치 위주)로 작성필수>

- ▶ 공적사항 작성내용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상자가 되면 행정안전부의 상훈포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되며, 이때 2,000자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 입력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텍스트로만 2,000자 이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형식체계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1. (카테고리)

○ (주요사항)

- (세부내용)

* 참고사항

(첨부 2)

추천인 소속(기업·단체) 현황

포상후보자	
성명	
직위(급)	

소속기업			
기업(단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종업원수	
업종		주 생산품	
사업장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설립연월일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매출현황 (단위 : 억원)	2023년	2022년	
	총매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익 : 수출액 :	총매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익 : 수출액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귀하

(첨부 3)

경력(재직) 증명서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수 공 기 간		해당 분야 경력기간 산출 기재 (<u>포상추천일 기준</u>) 예 : 15년 5개월 12일 경우 : 150512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	담 당 업 무
~	년		
※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	월		
~	년		
~	월		
~	년		
~	월		
~	년		
~	월		
~	년		
~	월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첨 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인사부서 작성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소속업체(단체)명

대 표 자 (직인)

(첨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p>▪ 신고의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 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첨부 4-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 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4.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첨부 5)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불인정

(첨부 6)

반명함판 사진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e-mail송부